

충남대학교 지식재산규정 운영지침

제정 2020. 1. 30.

개정 2021. 10. 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남대학교 지식재산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규정에 따른다.

1. “발명인터뷰제”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 신고된 발명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선행기술조사, 발명 컨설팅, 발명의 평가 등을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술이전 기여자”란 산학협력단에 2개월 이상 근무한 교직원으로서 기술이전 및 사업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말한다.
3. “전담 특허사무소”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식재산 출원·등록·유지 등의 제반 업무를 대리하는 특허사무소(특허법인)를 말한다.
4. “계약상대자”란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지식재산 등에 대한 권리를 양도(전부 또는 일부) 받거나, 실시권(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을 허여 받은 제3자를 말한다.
5. “교원 창업”이라 함은 교원이 재직 및 휴직 중에 대학의 승인을 받아,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신이 근무 중 개발한 기술 및 노하우와 타인의 기술 및 노하우 포함)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하며, 여기서 ‘설립’이란 창업하는 기업의 대표 등

임원(사외이사, 비상근 등기이사, 감사 제외)에 취임하는 경우 뿐 아니라 제3자가 설립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발명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지식재산의 취득·처분·관리·보상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령이나 정부부처(그 출연기관 포함) 및 제3자와 체결한 협약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동 관계 협약에 따른다.

제2장 지식재산 관리 및 발명인터뷰제 운영

제4조(발명신고) ①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 등이 제출하는 발명신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권리승계합의서(별지 제2호 서식)
3. 기타 지식재산권 출원 관련 서류

② 발명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지식재산 출원·등록·유지 등의 제반 업무(이하 “지식재산 업무”라 한다)는 산학협력단과 계약된 전담 특허사무소에 위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전담 특허사무소 중 기술 분야가 없는 경우
2. 공동 권리자가 특허사무소(특허법인)를 지정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비 전담 특허사무소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발명자 등은 비 전담 특허사무소 활용 사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산학협력단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발명인터뷰제 운영) ① 산학협력단은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발명자 등이 신고한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에 대하여 권리의 승계 전에 해당 발명을 대상으로 발명인터뷰를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명인터뷰를 시행하기 위하여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3인 이상의 발명인터뷰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③ 발명인터뷰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은 발명인터뷰 평가표(별지 제7호 서식)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발명 승계 및 지식재산권 비용 부담) ① 산학협력단은 발명인터뷰 평가 등급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권리 승계를 결정한다.

1. 국내출원은 S, A, B 등급 수준의 발명
 2. 해외개별국출원 및 국제출원(PCT)은 S, A 등급 수준의 발명
- ② 산학협력단은 권리를 승계하기로 결정한 발명에 대하여 발명인터뷰 평가 등급에 따라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권리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이하 “지식재산 비용”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구분		S 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하
국내	출원, 등록 및 유지·관리비용	최대 100% 지원			지원 없음
해외	출원, 등록 및 유지·관리비용	최대 100% 지원 (최대 2개국 지원)	최대 100% 지원 (최대 1개국 지원)	지원 없음	
제3자와 공동출원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지원(단, 평가등급에 따른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PCT(특허협력조약) 출원은 해외 1개국으로 산정					
※ EPC(유럽특허조약) 지식재산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공동 권리 특허의 해외 진입시, 해외특허 지분을 총합이 200% 이내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통해 지원					

③ 제2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부담하는 지식재산 비용은 제18조제3항에 정한 범위로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로 하여 비전담 사무소를 이용할 경우 산학협력단이 부담하는 지식재산 비용은 제18조제3항에 정한 범위의 70%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부담하는 지식재산 비용에는 우선심사 신청, 심판 및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3장 기술이전 및 관리

제7조 (기술이전 유형 및 방식) ① 기술이전 유형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구분되며, 기술이전에 대하여 정부부처(그 출연기관 포함) 및 제3자와 체결한 협약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 기술이전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술이전의 방식은 지식재산 등에 대한 실시권(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허여, 권리 양도(전부 또는 일부) 등으로 구성된다.

③ 산학협력단과 제3자 간 공동으로 소유한 지식재산 등에 대한 기술이전은 공동소유자와 상호 합의에 의해 진행한다.

제8조(기술이전 계약)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계약조건을 정하여 양수인 또는 계약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기술이전 방식(실시권 허여, 권리 양도 등)
 2. 기술료(고정 기술료, 경상 기술료, 실적 기술료 등)
 3. 실시권의 유형·범위·내용(실시유형, 실시기간, 실시지역, 실시내용 등)
 4. 계약해지 조건 및 그 밖의 기술이전 계약의 세부 내용
- ② 기술이전 계약은 지식재산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술이전 방식을 따른다.

1. 지식재산이 발명인 경우 권리양도(전부 또는 일부) 및 실시권 허여(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를 원칙으로 한다.
2. 지식재산이 노하우인 경우 양도를 원칙으로 하며, 노하우 전수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3. 지식재산이 산업자문인 경우 양도를 원칙으로 하며, 산업자문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③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한다.

1. 권리(향후 취득 가능한 권리 포함)양도 계약의 경우, 출원인 변경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양수인이 전부 부담 한다.
2. 전용실시권 허여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지식재산 비용과 실시권 설정등록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 상대방이 전부 부담 한다.
3. 통상실시권 허여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지식재산 비용과 실시권 설정등록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 상대방이 전부 부담한다. 다만 통상실시권 허여 대상에 대해 다수의 계약이 체결된 경

우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지식재산 비용은 계약일이 우선한 계약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며, 실시권 설정등록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 상대방이 각자 부담한다.

- ④ 산학협력단은 제1항에 따른 계약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해당 발명자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 ⑤ 산학협력단이 결정한 기술이전 계약조건에 대하여 해당 발명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제9조 (기술료 산정) ① 기술료는 기술이전 대상의 개발에 투입된 연구비 및 연구과제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술의 중요도에 따라 산학협력단은 기술(가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료는 기술이전 대상에 소요된 지식재산 비용 이상으로 산정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기술료를 조정할 수 있다.

- 1. 산학협력단장이 산학협력 성과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출원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④ 교원 창업 기업의 기술료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최초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적용한 고정 기술료와 해당 기업의 지분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기술료
-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적용한 고정 기술료와 해당 기업의 지분 1%에 상당하는 유가증권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적용한 고정 기술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지분 3%에 상당하는 유가증권

제10조 (기술이전 마케팅 및 협상) ① 기술이전 마케팅 및 협상 등은 산학협력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은 기술의 중요도에 따라 기술이전 중개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기술이전 중개자가 기술이전 마케팅 및 협상 등에 참여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산학협력단과 해당 기술이전 중개자가 체결한 계약 범위 내에서 정한다.

제11조(기술창업 기업 특례 등) ① 산학협력단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자회사 또는 교원 창업 기업에서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을 실시하기 위해 기술이전을 요청한 경우에는 기술이전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또는 교원 창업기업에서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을 무단으로 실시할 수 없으며, 산학협력단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제한행위) 산학협력단이 제3자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산학협력단과 해당 발명자는 계약기술의 수준 이상의 실용화, 상품화 성공에 대한 구두 약속, 확약 또는 보증을 하거나 이에 관한 손해배상 약정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사후관리 및 계약해지) ① 산학협력단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방과 상호협력을 도모하며, 해당 발명자는 기술이전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 상대방에게 기술전수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1.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 계약 상대방이 휴·폐업하거나, 조업을 중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조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3. 그 밖에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산학협력단은 기술이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 노하우 등에 대한 계약 상대방의 무단사용과 비밀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해당 계약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위탁) ① 산학협력단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 협상, 계약, 사후관리 및 기술창업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외부 전문기관의 업무위탁 수수료는 산학협력단과 외부 전문기관이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른다.

제4장 기술료 등의 사용 및 관리

제15조(기술료 등의 사용) ① 규정 제16조에 따른 기술료 중 외부기관의 공동 소유지분, 정부납부기술료, 기술이전 중개자의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이하 “기술이전 수익금” 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발명자	산학협력단			
	기술재투자비		기관운영비	기여자보상금
	발명자	기관		
60%	10%	10%	10%	10%
※ 발명자가 기술이전 대상기업 발굴한 경우 발명자 보상금은 5% 가산(기술재투자비 비율 조정)				
※ 발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기여자 보상은 5% 가산(기관운영비 비율 조정)				

-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이전 수익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한다.
- 발명자 보상금은 발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발명자 기술재투자비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발명자의 요청에 따라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목적으로 한 연구개발비, 지식재산 비용으로 사용한다. 단, 발명자 기술재투자비 사용은 충남대학교 재직기간 동안 가능하며 퇴직시 기관 기술재투자비로 산입한다.
 - 기관 기술재투자비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목적으로 한 연구개발비, 기술가치제고비, 기술이전 사후관리, 기술사업화 경비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 기관운영비는 기술사업화 전문인력의 인건비 등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확산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 ③ 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발명자 보상금을 받는 해당 발명자는 발명자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심의)** ① 산학협력단장은 기술이전기여자보상금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매년 심의 대상 기간(1월 1일~12월 31일)의 기술이전 실적에 근거하여 연 1회 이상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에 대해 심의한다. (이하 “심사위원회” 라고 한다.)
- ② 보상금 지급기준은 직접기여자와 간접기여자 비율을 각 50%로 하며 직접기여자의 기여도는 기술이전기여자 기여도 산정표(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산정한다.
- ③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은 개인별 연간 총 금액액을 넘지 못한다.
- ④ 기술이전 기여자 범위는 심의 대상 기간 중 산학협력단 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로 한정한다. 다만, 근무기간 산정 시 휴직기간(출산휴가 포함)은 제외한다.

- 제17조(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 지급)** ① 산학협력단장은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기술이전 기여자에게 지급한다.
- ② 기술이전 기여자의 주소 및 연락처의 변동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이를 산학협력단이 관리하며, 보상금 원금 지급 및 소멸시효는 규정 제17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위원회 심의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5장 전담 특허사무소 운영 및 관리

- 제18조(전담 특허사무소 운영)** ① 산학협력단은 발명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지식재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특허사무소를 제19조에 따라 평가 및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② 전담 특허사무소와의 계약 체결 시 비밀유지 의무, 발명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개인명의 지식재산 출원 수입 금지, 각종 통지문 송달 기간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다.
- ③ 전담 특허사무소의 지식재산 업무 수행에 관한 위임수료는 산학협력단이 별도로 정한다.

1. 전담 특허사무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태하는 경우
2. 전담 특허사무소의 귀책으로 인해 산학협력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전담 특허사무소가 휴·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한 경우
4. 전담 특허사무소 선정 시 제출한 신청서 상의 업무수행 인프라가 감소된 경우
5. 전담 특허사무소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21조(해석 및 시행)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① (시행일) 이 운영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운영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신고자	성명		연락처	(내 선) (휴대폰)	
	소속	OO 대학 / OO 학과	이메일		
발명의 명칭					
기술 분야	☐ BT ☐ CT ☐ ET ☐ IT ☐ NT ☐ ST ☐ 기 타 기술				
구분	☐ 국내출원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저작권 ☐ 기타() ☐ 우선권주장(원출원일: /원출원번호:) ☐ 분할출원(원출원일: /원출원번호:)			
	☐ 해외출원	☐ PCT	국내출원정보(출원일: /출원번호:)		
		☐ 개별국	국내출원정보(출원일: /출원번호:)		
		(국가명1/국가명2)	PCT출원정보(출원일: /출원번호:)		
공동출원	기관명	권리지분(%)	비용부담율(%)	담당자정보(성명/소속/직위/연락처)	
	※공동출원 사유:				
기타사항	비용부담	☐ 산학협력단 지원 ☐ 연구비 계상 ☐ 기타()			
	추가절차	☐ 심사청구 ☐ 심사 미청구 ☐ 청구범위제출유예(가출원) ☐ 우선심사			
	발명공개	☐ 논문·학술지게재 ☐ 학회·강연회발표 ☐ 연구보고서 ☐ 카탈로그 ☐ 제품판매 ☐ 기타() ※공개일자:			
특허사무소	전담사무소	화학/에너지/자원	생명/바이오/의료	전기/전자/정보통신	기계/건축/환경/소재
		☐ 오염(이성렬) ☐ 플러스(권오식) ☐ 천지(박형달)	☐ 공간(백경엽) ☐ 그린(최규환) ☐ 주원(나영민)	☐ 5T(김재문) ☐ 제일(김현수)	☐ 라운(이충한) ☐ 지울(박진호)
		사무소명:		담당자:	
	비전담사무소	연락처:		이메일:	
연구과제	사업명				주관부처(전문기관)
	과제명				연구 책임자
	연구기관				참여(협동)기관
	연구기간				연구협약일
	연구비	총000,000,000원 (정부: 000,000,000원, 자체: 000,000,000원, 민간: 000,000,000원)			
기술사업화 계획		※기술이전 및 사업화 계획:			
상기의 발명을 충남대학교 지식재산 규정 및 운영지침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발명자 정보					
성명(국문)	성명(영문)	소속(대학/학과)	지분(%)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발명 정보					
발명 개요	○ 발명의 목적 : ※발명의 동기, 필요성, 종래기술의 문제점 등 왜 본 발명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기재 ○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어떻게(어떠한 기술로) 해결하였는지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 발명의 효과 : ※본 발명을 구현함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무엇이 얼마나 좋아졌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기재 ○ 대표적인 청구범위 : ※특허권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항, 기술적인 특징사항을 간략하게 기재				
관련 도면	※도면, 간단한 스케치, 사진 또는 flow chart 등 개수에 제한 없이 기재 가능				
응용 분야					
발명의 활용 가능성					
기술의 독창성/ 우수성					

< 별지 제2호 서식 >

권리승계합의서(양도증)

발명의 명 칭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외출원의 경우: 성명,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국내출원과 별도 제출)			
출원인 (양수인)	명 칭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산학협력단에서는 관련 법률에 의거 지식재산권 출원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수집 항목 : 주소, 주민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 성명 ■ 수집한 개인정보는 지식재산권 존속기간까지 보관합니다. ■ 정보제공 주체는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지식재산권 출원(발명자 정보 입력)에 제약이 있습니다.				
위 발명자(양도인)는 상기 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관련 지식재산권을 충남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에 의거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양도하며, 동 규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발명자 보상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명		연락처	(내선) (휴대폰)
	소속	OO 대학 / OO 학과	이메일	
기술이전 정보	기술이전(발명) 명칭			
	기술구분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저작권 ☐ 기타()		
	이전방식	☐ 양도 ☐ 전용 실시 ☐ 통상 실시 ☐ 기타()		
	기업명	㈜○○전자	계약일	2019년 00월 00일
	출원번호	제10-2018-1234567	출원일	2018년 00월 00일
	등록번호	제10-2019-1234567	등록일	2019년 00월 00일
연구개발 정보	연구개발 구분	☐ 자체연구개발 ☐ 국가연구개발_A ☐ 국가연구개발_B(전문기관 기술료징수 필수)		
	자체연구개발			
	※ 위 기술은 자체연구개발의 성과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이 아님을 확인함 ○ ○ ○ (인)			
	국가연구개발			
	사업명			
	과제명			
	주관부처(전문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협동)기관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비	총000,000,000원 (정부: 000,000,000원, 자체: 000,000,000원, 민간: 000,000,000원)			
상기 기술이전에 따른 발명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발명자 보상금 지급 대상자 정보				
성 명	(인)	소 속		보상금 지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계좌정보		
성 명	(인)	소 속		보상금 지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계좌정보		
성 명	(인)	소 속		보상금 지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계좌정보		
성 명	(인)	소 속		보상금 지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계좌정보		
성 명	(인)	소 속		보상금 지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계좌정보		
성 명	(인)	소 속		보상금 지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계좌정보		
성 명	(인)	소 속		보상금 지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계좌정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산학협력단에서는 관련 법률에 의거 기술이전에 따른 발명자 보상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수집 항목 : 성명, 발명자지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 계좌정보

■ 수집한 개인정보는 기술이전 종료 및 발명자 보상금 청구·지급에 따른 소멸시효까지 보관합니다.

■ 정보제공 주체는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발명자 보상금 지급에 제약이 있습니다.

비전담 특허사무소 활용 사유서

발명자	성 명	
	소 속	
발명의 명칭		
비전담 특허사무소명		
담당 변리사		
연 락 처		Tel: E-mail:
[활용 사유]		
본 발명자는 상기 발명에 대한 지식재산 출원·등록·유지 등의 제반 업무를 상기 비전담 특허 사무소에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동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발명자 (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주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발명의 명칭				
[신청이유] 1. 지식재산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권리승계 여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 지식재산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급된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3. 지식재산 운영지침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이전 계약조건에 대한 이의신청				
상기 본인은 충남대학교 지식재산규정 및 운영지침에 의거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에 대한 증거서류 및 기타 자료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지서

문 서 번 호	
수 신	
발명의 명칭	
제 목	지식재산심의위원회 이의신청결과 통지
충남대학교 지식재산규정 제8조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결정사항	
1. 신청이유 (요약)	
2. 결정내용	
충남대학교 지식재산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발명인터뷰 평가표

관리번호		발명자	
발명의 명칭			

구 분	평가 항목	평가기준	점수
특 허 성	권 리 등 록 가능성	① 새로운 개념 또는 선행기술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기술로 특허등록 가능성 매우 높다. ② 선행기술과 구성 또는 효과의 차이가 있어 특허등록 가능하다. ③ 1개의 선행기술 또는 2개 이상의 선행기술의 조합으로 신규성,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기 술 성	기 술 완성도	①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의 테스트 결과, 기술 실현성이 입증된 기술이다. ②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중에 있는 기술이다. ③ 연구개발 아이디어 단계 또는 진행 중이거나 완료 단계에 있는 기술이다.
기술의 우수성		①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기본 발명이다. ② 기존기술에 대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 또는 개선, 개량의 정도가 큰 발명이다. ③ 개량의 정도가 보통이거나, 다른 변형예(실시예)를 제시한 수준 또는 기존기술과 차별성이 부족한 발명이다.	
기 술 동 향 부합성		① 기술군의 발전방향에 부합되며, 최신의 선도기술이다. ② 기술군의 발전방향에 부합되지만 경쟁 또는 유사기술이 존재한다. ③ 기술군의 발전방향에 부합되지만 대체기술이 존재한다.	
기 술 수 명		① 도입기의 기술로 상당기간 동안 활용이 가능하다. ② 성장기의 기술로 활용도가 검증되고 있다. ③ 성숙기의 기술로 활용성이 약해지고 있거나, 활용도가 제한적이다.	
시 장 성	상용화 가능성	① 관련기술이 상용화되어 시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② 관련기술이 상용화 진행 중에 있다. ③ 관련시장이나 기술의 추이를 볼 때, 향후 몇 년 이내에 상용화 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적 파급효과	① 기술을 적용 가능한 제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도 매우 크다. ② 기술을 적용 가능한 제품의 종류가 다양한 편이고, 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도 비교적 큰 편이다. ③ 기술을 적용 가능한 제품의 종류는 다양한 편이지만, 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는 작은 편이다.	
	시장의 성장성	① 시장이 성장기에 있다. ② 시장이 도입기 또는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접어드는 상태이다. ③ 시장이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접어드는 상태 또는 성숙기 또는 쇠퇴기에 있다.	
	기 술 수요성	① 발명기술에 대한 수요가 많으며 그 수요는 충족되어 있지 않다. ② 발명기술에 대한 수요가 있으며 그 수요의 충족이 다소 미흡하다. ③ 발명기술에 대한 수요가 있으나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다.	
	시 장 진 입 용이성	① 법.제도적 장려요인이 있어 시장진입이 용이하거나 신규시장인 관계로 시장 선점이 가능하다. ② 향후 법.제도에 장려요인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③ 법.제도적 장려 내지 제약요인이 없으나, 진입장벽이 있으며 법.규제 제약요인이 많고 승인이 까다로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 점수 산정: ① 10점, ② 8점, ③ 6점

평가의견			
특허성	※ 평가 및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 기재		
기술성	※ 평가 및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 기재		
시장성	※ 평가 및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 기재		
기 타	※ 평가 및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 기재		
평가등급 (해당등급에 표시)			
S등급 (90점 ~ 100점)	A등급 (80점 ~ 89점)	B등급 (70점 ~ 79점)	C등급 (70점 미만)
상기 발명에 대하여 위와 같이 평가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였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	

< 별지 제8호 서식 >

기술이전 신청서

신청자	기업명	㈜OOOOO		사업자등록번호	314-82-09264	법인등록번호	160471-0004040
	기업구분	☐ 대기업 ☐ 중기업 ☐ 소기업 ☐ 개인 ☐ 기타()					
	업태	제조업	업종	전자부품제조	대표자	홍길동	
	전화	042-000-0000	팩스	042-000-0000	이메일	abc@daum.net	
	담당자	성명	김철수	부서	경영지원부	직위/직책	과장/팀장
		전화	042-000-0000	핸드폰	042-000-0000	이메일	abc@daum.net
	주소	(우편번호)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대상기술	기술유형	☐ 특허 ☐ 실용신안 ☐ 노하우 ☐ 산업자문 ☐ 저작권 ☐ 물질 ☐ 품종 ☐ 상표 ☐ 디자인 ☐ 기타()					
	특허실용신안	국가	공통권리자	출원번호(출원일)		등록번호(등록일)	
		한국	OO연구소	10-2015-1234567(2015-12-31)		10-1234567(2017-06-30)	
		미국	-				
	기술정보	노하우산업자문	※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내용 기재(기술유형, 기술내용, 기술범위, 기타사항 등)				
		기타	※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내용 기재(기술유형, 기술내용, 고유번호(등록/등재/설정 등)				
계약조건	이전방식	☐ 양도 ☐ 전용실시 ☐ 통상실시 ☐ 기타()					
	기술료	고정 기술료 ※정해진 기술료	납부일	2019-12-31	금액	50,000,000 원	
			납부일	2020-03-31	금액	50,000,000 원	
			납부일	2020-06-30	금액	50,000,000 원	
		경상 기술료 ※매출연동 기술료	※ 기술료 규모 및 내용에 대해 기재 (총매출액의 10%)				
		실적 기술료 ※실적연동 기술료	※ 기술료 규모 및 내용에 대해 기재 (임상개시시점: 100,000,000 원, 제품판매시점: 200,000,000 원)				
	기타기술료	※ 기술료 규모, 조건, 기술료 납부 방법 및 형태 등 기재					
	계약일정	계약일	2019-12-30		계약기간	2019-12-30~2020-12-29(12개월)	
	기타사항	※기술이전에 관련된 기타사항 기재					
상기의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보유기술에 대한 기술이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기술이전 동의서

대상 기술	기술명						
	기술유형	☐ 특허 ☐ 실용신안 ☐ 노하우 ☐ 산업자문 ☐ 저작권 ☐ 물질 ☐ 품종 ☐ 상표 ☐ 디자인 ☐ 기타()					
	특허 실용신안	국가	공동권리자	지분율	출원번호(출원일)	등록번호(등록일)	
		한국	OO연구소	00%	10-2015-1234567(2015-12-31)	10-1234567(2017-06-30)	
		미국	-				
	PCT	-					
	노하우 산업자문	※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내용 기재(기술유형, 기술내용, 기타사항 등)					
	기타	※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내용 기재(기술유형, 기술내용, 고유번호(등록/등재/설정 등))					
	구분	성명	소속(대학/학과)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대표발명자	홍길동	OOOO대학 OOOO학과	010-1234-1234	abcde@cnu.ac.kr		
발명자 2							
발명자 3							
기술이전	이전방식	☐ 양도 ☐ 전용실시 ☐ 통상실시 ☐ 기타()					
	기술료	고정 기술료	납부일	2019-12-31	금액	50,000,000원	
			납부일	2020-03-31	금액	50,000,000원	
			납부일	2020-06-30	금액	50,000,000원	
		경상 기술료	※ 기술료 규모 및 내용 (해당기술이 적용된 제품 총매출액의 10%)				
		실적 기술료	※ 기술료 규모 및 내용 (임상개시시점: 000원, 제품판매시점: 000원)				
	기타기술료	※ 기술료 규모, 조건, 기술료 납부 방법 및 형태 등 기재					
	계약일정	계약일	2019-12-30		계약기간	2019-12-30~2020-12-29(12개월)	
	기타						
	계약상대자	기업명	㈜OOOOO	사업자등록번호	314-82-09264	법인등록번호	160471-0004040
기업구분		☐ 대기업 ☐ 중기업 ☐ 소기업 ☐ 개인 ☐ 기타()					
업태		제조업	업종	전자부품제조	대표자	홍길동	
전화		042-000-0000	팩스	042-000-0000	이메일		
연구과제	주소	(우편번호)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 00					
	사업명				주관부처(전문기관)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협동)기관		
	연구기간				연구협약일		
	연구비	총000,000,000원 (정부: 000,000,000원, 자체: 000,000,000원, 민간: 000,000,000원)					
발명자 요구사항 ※기술이전에 대한 요구사항							
상기 기술이전의 내용과 조건에 동의하며, 관련 정보와 의견을 제출하오니 기술이전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대표발명자 (인)							

기술이전기여자 기여도 산정표

1. 기술이전계약명 :
2. 대상기술명 :
3. 확보된 기술료에 대한 기여업무 간 비중 산정

기술이전 기여 업무*	업무 간 비중 (A)
가.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직접적 기여(기술이전담당부서 소속)	A ₁
나.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간접적 기여(시장성평가, 가치평가, 기술소개서 작성 등)	A ₂
다. 실시기업 발굴에 기여	A ₃
라. 기술실시계약 체결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기술료 수입 증대에 기여	A ₄
마. 경상기술료 확보에 기여(기술실시계약 체결 기업에 대한 후속지원 및 실사 등)	A ₅
바. 지식재산권 침해 자 적발 및 기술적·법적 지원을 통한 권리확보에 기여	A ₆
사. 심판·소송·중재 등 법률적 대응을 통한 기술료 징수에 기여	A ₇
아. 기타(연구책임자의 추천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기술이전 기여자로 인정한 자)	A ₈
계	1

* <별표>의 기술이전기여자 구분에 따른 업무에 해당

4. 기술이전기여자 기여도 산정
- ※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가.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직접적 기여(기술이전담당부서 소속)

기술이전 기여자	개인번호	기여내용	개인 기여도(B)	기여도 (A ₁ ×B)
계			1	A ₁

나.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간접적 기여(시장성평가, 가치평가, 기술소개서 작성 등)

기술이전 기여자	개인번호	기여내용	개인 기여도(B)	기여도 (A ₂ ×B)
계			1	A ₂

다. 실시기업 발굴에 기여

기술이전 기여자	개인번호	기여내용	개인 기여도(B)	기여도 (A ₃ ×B)
계			1	A ₃

라. 기술실시계약 체결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기술료 수입 증대에 기여

기술이전 기여자	개인번호	기여내용	개인 기여도(B)	기여도 (A ₄ ×B)
계			1	A ₄

마. 경상기술료 확보에 기여(기술실시계약 체결 기업에 대한 후속지원 및 실사 등)

기술이전 기여자	개인번호	기여내용	개인 기여도(B)	기여도 (A ₅ ×B)
계			1	A ₅

바. 지식재산권 침해자 적발 및 기술적·법적 지원을 통한 권리확보에 기여

기술이전 기여자	개인번호	기여내용	개인 기여도(B)	기여도 (A ₅ ×B)
계			1	A ₅

사. 심판·소송·중재 등 법률적 대응을 통한 기술료 징수에 기여

기술이전 기여자	개인번호	기여내용	개인 기여도(B)	기여도 (A ₅ ×B)
계			1	A ₅

아. 기타(연구책임자의 추천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기술이전기여자로 인정한 자)

기술이전 기여자	개인번호	기여내용	개인 기여도(B)	기여도 (A ₅ ×B)
계			1	A ₅

5. 기술이전기여자 기여도

기술개발기여자	개인별 합산 기여도 (D=∑ A _N ×B)	기여자 확인 (서명)
		(인)
		(인)
		(인)
계	1	

[별표] 기술이전 직접기여자 대상범위

1. 충남대학교에 속한 자로서 연구개발결과 상용화 실시를 위한 전략수립, 기술평가, 마케팅, 협상, 계약체결, 사후관리 등에 기여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가. 기술이전담당부서에 소속된 자인 경우에는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로서 해당 기술이전에 통상의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노력이 있는 자
 - 나.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시장성평가, 가치평가, 기술소개서 작성 등을 통해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자
 - 다. 미활용 연구개발결과물의 기술설명회 주관 및 참여, 국·내외 기업 대상 홍보 등을 통해 실시기업을 발굴하는데 기여한 자
 - 라. 기술실시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연구개발결과물의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
 - 마.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한 후속지원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경상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 바. 연구개발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자를 적발하거나 기술적·법적 지원을 통해 권리확보에 기여한 자
 - 사. 연구개발결과물과 관련한 심판·소송·중재 등 법률적 대응을 통한 기술료 징수에 기여한 자
 - 아. 기타 연구책임자의 추천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기술이전기여자로 인정하는 자
 - ※ 다만, 가~아에 해당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기술이전에 따라 발생한 기술료를 통해 성과 배분을 받은 기술개발기여자는 기술이전기여자 대상자에서 제외
2. 충남대학교 소속이 아닌 타 기관에 속한 자로서 충남대학교의 연구개발결과 상용화 실시를 위한 전략수립, 기술평가, 마케팅, 협상, 계약체결, 사후관리 등에 현저히 기여한 자로서 해당 연구 성과물의 연구책임자가 추천하고 산학협력단장이 기술이전기여자로 인정하는 자
 - ※ 다만, 타 기관에 속한 자로서 타 기관 및 해당 개인과 별도의 관련 중개계약 등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보상